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51호 2022. 12. 22.(목)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3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3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6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7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8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7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80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8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109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84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14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 한자어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 및 사무의 위임사항 개정(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8조) ○ 한자어 용어 순화(제22조 제목 및 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단·실·과·소”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 사업소”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책임)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u>실·과·소</u> 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조(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단·실·과·소</u>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u>보건소장</u> ,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임) ----- ----- ----- -----, <u>보건소장</u> , <u>사업소장</u> ,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u>보건소</u>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u>보건소</u> , <u>사업소</u> , ----- -----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

-----, 보건소장, 사업소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
----- 분실-----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분실-----

-----.

④ (생 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생 략)

② (생 략)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1. ----- 분실-----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 보건소장, 사업소장,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 보건소장, 사업소장,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제4조) ○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제5조 ~ 제8조) ○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제9조, 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제11조, 제1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연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

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전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제1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

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회수 및 세척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음식판매자 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 (제2조, 제3조) ○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
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
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营业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및 사업내용(제5조, 제6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
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
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
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
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부패나 병해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지 번: (지목 :)					
	소유자: (연락처:)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신청사유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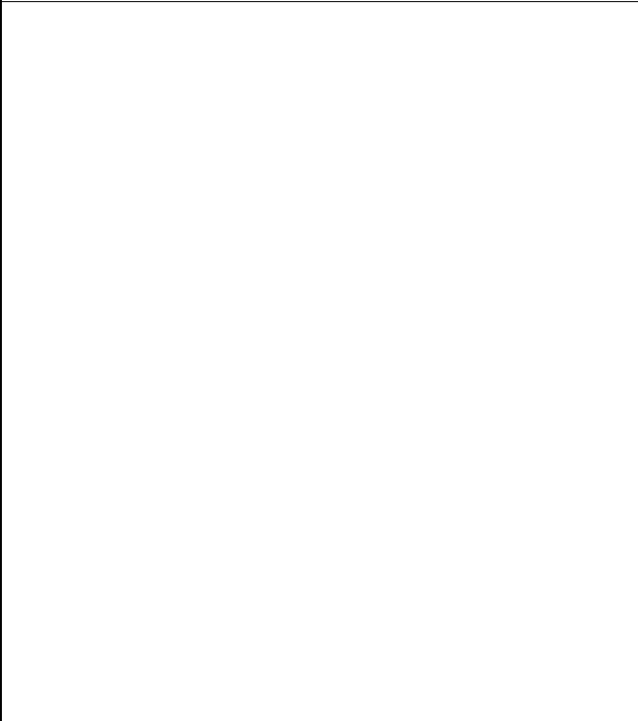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인천 연수구 ○○동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연수구 _____번지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인)
(연락처:)

붙임 : 공동소유자 동의서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동 호수 명기)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안전문화 조성 등(제5조) ○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비치(제6조,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제9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제1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장구 비치)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여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범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연수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서 정한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 학교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로 확대하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제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 재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학 재학생임”을 “대학생임”으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 <u>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 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u>	제2조(대상) <u>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 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대학 재학생</u>	2. ----- ----- ----- <u>대학생</u>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u>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u> 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① ----- ----- ----- ----- <u>대학생임</u> ----- ----- <u>(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단체인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실천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안전보안관 구성 및 임기, 활동(제3조 ~ 제5조) ○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 포상(제6조 ~ 제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
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
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앞쪽)

연수구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0000.00.00
성별	(남, 여)	연락처	0000-0000 (000-0000-0000)
주소			
E-mail			
직업			
지원 사유			
기존 단체 참여여부	☐ 예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	
		☐ 자율방재단 ☐ 교통봉사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기타 【 】	
	☐ 아니오		
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연수구 안전관리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1) 연수구 안전관리과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심의결과 통보,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 (2) 연수구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표창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필수 정보]	[선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직업, 안전관련 단체 참여 여부 등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회원 탈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연수구 안전관리과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이름: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22.04.26.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및 주민투표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표현 삭제(제2조제4항,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신설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제12조) ○ 「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규정 추가(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 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로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

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3(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에 있어서”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할 때에”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0조 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외국인</u> ----- ----- ----- -----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u>외국인</u> 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사람</u> 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u> ----- ----- ----- -----, ----- ----- ----- <u>외국인</u> 은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사항</u>	<삭 제>

2.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는 위원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수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중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3(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
----- 청구인대표자중

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
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
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
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
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
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
와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
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는 관보·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명서 -----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을 할 때에 -----

-----.

제16조(공표방법 등) -----
--, -----, 법 제10조제2항,
-----,
-----,
-----, 법 제13조제
2항,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 일간신문 중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제2조) ○ 답례품 종류(제3조)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제4조, 제5조) ○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제8조 ~ 제11조, 제22조 ~ 제23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 ~ 제21조) ○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부칙 제2조 ~ 제4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구에 주된 사업장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한 물품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

예품

12. 관광·공연 입장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

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될 때

제1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레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 근거하여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사항(제2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제4조) ○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주요시책 자문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 제목 수정(제3조, 제10조, 제11조) ○ 인용조문 수정(제19조, 제22조, 제31조) ○ 시설 관리 또는 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제32조) ○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제2조, 제4조, 제5조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 라 함은” 을 “단체” 란” 으로, “2이상” 을 “둘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 를” 을 “사람을” 로 한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제10조 제목 “(위원의 임기)” 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차례” 를 “한 차례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를 “구청장은 위원이” 로, “경우에는 구청장이” 를 “경우 해당위원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스스로” 를 “위원 스스로” 로 한다.

제11조 제목 “(직무)” 를 “(위원장의 직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 를 “위원회의 사무” 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에” 를 “위원회의 회의에” 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을 “「관광진흥법」” 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을 “제18조에 따른” 으로,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을 “다음”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을 “제19조제1항”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을 “사람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 를 “사람으로” 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질병으로 인하여” 를 “질병 등의 사유로” 로 한다.

제30조 중 “모니터” 를 “관광모니터” 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정 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 또는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관광시설 또는 업무는 제2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외국인 관광객”이란 <u>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u>	1. “관광객”이란 <u>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u>
2. ~ 3.(생략)	2. ~ 3.(현행과 같음)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u>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u>	4. ----- <u>단체</u> ”란 ----- ----- <u>둘 이상</u> ----- ----- -----.
5. “문화관광해설사”란 <u>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u>	5. ----- ----- ----- ----- ----- ----- <u>사람을</u>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략)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생략)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 3. (생략)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소관 국장과 구의회 의원 2명
<신설>

2.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현행과 같음)

1. ----- 관광객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 따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 4. (생략)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 5. (생략)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법 및 문화체육

-----.

② 구청장은 위원이 -----

-- 경우 해당 위원을 -----

-----.

1. 위원 스스로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위원회의 사무-----.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

제17조(지급 제외) -----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
는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광진흥법」 ---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임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4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9조(임무) ① 제18조에 따른 -----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 제19조제1항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① -----

-- 사람을 -----
-----, -----

-----.

② -----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28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4. (생략)

제30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에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른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

-----, -----
-----, -----
----- 사람으로 -----
--.

제26조(임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8조(해촉) -----

--.

1. 질병 등의 사유로 -----
2. ~ 4.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
----- 관광모니터 -----

-----.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정 모니터 운영 조

<u>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②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u> 제32조(위탁) ① (생략) <u><신설></u> <u>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u>	<u>례」를 준용한다.</u> 제32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u> <u>③ ----- 필요한 -----</u> <u>-----</u> <u>-----.</u>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연수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인구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3.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될 때.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행사 전 응급 구조 교육 및 질서 유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 연수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변경 ○ 현재 연수구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침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및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변경 (제17조제2호) ○ 함박비류도서관 주소 도로명주소로 변경(별표 1) ○ 연수꿈담도서관 운영시간 변경(별표 2) ○ 연수꿈담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터 수수료 추가(별표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7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창달” 을 “발전”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 를 “전임위원”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단” 을 “다만”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제19조제5항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신분증” 을 “신분증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대출 제한에 관하여” 를 “이 경우 대출 제한에” 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오손” 을 “훼손”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타인” 을 “다른 사람”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분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분관	해돋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3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17

[별표 2]

도서관 운영 시간(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학습열람실	07:00 ~ 22:00
		공연장	10:00 ~ 22:00
		세미나실	10:00 ~ 18:00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유아자료실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연장	09:00 ~ 22:00
		동아리실	10:00 ~ 22:00
분관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10:00 ~ 18:00 (목요일 20:00까지)
		공연장	10:00 ~ 22:00
		독서토론실	10:00 ~ 18:00
분관	해돋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연장	10:00 ~ 22:00
		디지털북카페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학습열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자료실	09:00 ~ 18:00
		커뮤니티룸	09:00 ~ 18:0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자료실	09:00 ~ 18:00
		프로그램실	09:00 ~ 18:00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 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 전기료 포함 ◦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야간	25,000원	
	연수꿈담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야간	50,000원	
해돋이도서관 공연장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연수꿈담도서관 동아리실		주.야간	무 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함박비류도서관 프로그램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구분	규격	금액	비고
복사기 및 프린터	B5이하	30원	◦ 1면당 기준
	A4	40원	
	B4이상	5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발전</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 <u>조례에서</u> ----- -----.
제9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u>당해</u>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임기 등) ① ----- -----, <u>한 차례만</u> ----- -----. ----- <u>전임위원</u> ----- ----- <u>해당</u> -----.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생략)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 3. (생략)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연수어린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3. ~ 6. (생략)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한 사람

1. -----

----- 다만, -----
----- 그 밖의 -----

2.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라 -----
-----.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 신분증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관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3.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이 경우 대출 제한에
_____.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혜순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
리 조례」 _____.

③ _____ 필요

한 _____

_____.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른 사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받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별표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8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2,188,890원

비고 : 1. 2023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4년~2026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2,099,880원	의원1인	월 2,188,890원
비고 : 1. 2019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0년~2022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비고 : 1. 2023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4년~2026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조직개편(2022.10.12.)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제1조, 제2조, 별표 2) ○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수정(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8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으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위임사무명란 제11호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과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
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 등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14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u>동장</u> 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u> , <u>동장</u> ----- ----- -----.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u>동장</u>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u>별표 2</u> ”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 ----- -----, <u>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u>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u>별표 2</u> ”, <u>동장</u> ----- ----- “ <u>별표 3</u> ”과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u>의하여</u>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u>따라</u>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2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9.03.14	송도바이오대로 시점에서 2400m 떨어진 오른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도동 19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240번길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